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91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김도읍·김성원·인요한

이헌승 · 조지연 · 장동혁

구자근 · 신동욱 · 김형동

조배숙 • 박성훈 • 김희정

의원(12인)

제안이유

국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운영할 것을 요구.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 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 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안 제48조제1항)
-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 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안 제58조제2항)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관제"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 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까지" 를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로 한다.

-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제8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절차등에"를 "절차,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로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제48조제2항의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동등한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					
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	2				
공기에 대한 <u>관제</u>	항공교통관제 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	①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					
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					
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u>제4호까지의</u>	<u>제4호까지, 제7</u>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야 한다.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
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
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
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
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하 같다.

- 1. (생략)
-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3. ~ 8. (생략)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 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 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
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
문교육기관
3. ~ 8. (현행과 같음)
③
<u>제4항까지의 규정</u>
제1항의

하다.

<신 설>

④ ~ ⑦ (생 략)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 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

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 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 고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제48조제 2항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에 따른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 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 계를 동등한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

<u>(5)</u>		<u>제</u>	<u> 4항</u> -			
	절차,	교육	훈련	등에	관하	여